

기술지원 협약서

- 사업명 :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
- 발주자(갑) :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
- 제조사(을) : (주)네오시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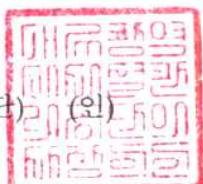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)에 대하여 “갑”은 발주자로서 “을”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
-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 - ② 위 물품 중 “을”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 -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的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“을”的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는 금액 (₩4,400,000)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화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을”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을”은 기술지원화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15년 1월 27일



“갑” (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) (인)



“을” (주)네오시스

기술지원협약서

- 사업명 :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
- 발주자(갑) :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
- 제조사(을) : (주)이아이에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)에 대하여 “갑”은 발주자로서 “을”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 위 물품 중 “을”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的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“을”的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는 금액 (₩3,300,000)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을”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을”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15년 1월 29일

“갑” (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)



“을” (주)이아이에스



기술지원협약서

- 사업명 :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
- 발주자(갑) :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
- 제조사(을) : 오픈정보기술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)에 대하여 “갑”은 발주자로서 “을”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 위 물품 중 “을”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的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“을”的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는 금액 (₩5,500,000)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을”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을”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15년 1월



“갑” (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)

“을” 오픈정보기술(주)



기술지원협약서

- 사업명 :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
- 발주자(갑) :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
- 제조사(을) : (주)영우디지탈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)에 대하여 “갑”은 발주자로서 “을”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물품 중 “을”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的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“을”的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는 금액 (₩6,600,000)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화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을”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을”은 기술지원화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15년 1월 29일



“갑” (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)

“을” (주)영우디지탈

